

研究論文

# 식민지조선의 여성범죄와 한국 팜프파탈의 탄생 - 방인근의 『마도의 향불』을 중심으로 -

최애순\*

I. 서론	IV. 결론: 악녀 후처의 등장과 팜프파탈의 고착화
II. 한국 팜프파탈의 기원과 식민지조선의 여성범죄	<참고문헌>
III. 『마도의 향불』에 삽입된 本夫殺害와 팜프파탈로서의 속경	<국문요약>

## I. 서론

1930년대 대중매체의 양대 산맥은 신문과 잡지였다. 별다른 오락거리가 없었던 당시 대중들은 신문과 잡지를 통해 생활 상식과 정보, 가십거리, 엽기적인 범죄사건, 희대의 연애사건 등등의 이야기들을 접할 수 있었다. 집안에만 있는 ‘가정부인’도 신문과 잡지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형편을 알 수 있었고, 그것들을 읽어야 남편이나 자식으로부터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었다.

어머니, **잡지책**에서 그랬는데요, 아이들의 싸우는 것을 일일이 막으면 못 쓴대요. 어릴 때 싸우기도 하고 언어 맞기도 해야 이담에 자라서 사회에 나가 생존경쟁에 견디어 나갈 만한 투쟁력(鬪爭力)이 생긴대요...애 듣기 싫다. 네 아버지던지 너는 걸핏하면 그 **잡진가 신문인가** 하는 것을 쳐들고 날뛰는 데는 정말 진력이 난다.<sup>1)</sup>

\* 고려대학교 강사, 현대소설 전공(elisha94@hanmail.net).

『찢레꽃』의 한 장면이다. 조경애는 어머니에게 잡지책에서 읽은 훈육 방식이 마치 절대가치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병석에 누워 있는 관계로 신문이나 잡지를 읽지 않는 어머니는 딸에게 절대논리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신문이나 잡지를 읽지 않는 가정부인은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는 세대차이로, 신여성에 매혹된 남편과는 연애관차이로, 점점 사회로부터 소외되었다. 그러나 가정부인과 모던걸, 학생, 심지어 남편까지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있었다. 바로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소설’이었다. 식민지시기 독자들은 ‘장르’를 중심으로 소설을 취사선택했다. 당시 인기를 끌었던 대표적인 장르 코드는 ‘가정비극’과 ‘연애’, ‘모험’, ‘탐정’이었다.<sup>2)</sup> ‘가정비극’의 유형이 국내 독자들에게 익숙한 것이었다면, ‘연애’, ‘모험’, ‘탐정’은 새롭고 신기하여 자극적인 소재였다.

식민지시기 신문과 잡지의 독자 확보는 이러한 장르 코드를 얼마나 활용하느냐에 달려 있었다. 독자의 ‘취향’을 파악하려는 움직임은 한 달 간격으로 간행되는 잡지보다 하루 간격으로 발행되는 신문이 훨씬 민감했다. 식민지시기 대중소설은 대부분 ‘신문연재소설’이었다.<sup>3)</sup> 신문소설은 ‘매회’ 독자에게 신선한 자극을 제공해야 했다. 식민지시기 대중소설의 ‘장르 결합’ 현상<sup>4)</sup>은, 독자의 자극을 최대한 높여야 하는 압박을 피할 수 없었던 ‘신문연재소설’이라는 형식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신문연재 연애소설에는 종종 살인사건으로 대표되는 범죄서사가 삽입된다. 이때 범죄를 저지르는 인물은 주로 여성이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연

- 1) 김말봉, 『찢레꽃』(大一出版社, 1978), 65쪽.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
- 2)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푸른역사, 2003), 336~337쪽.
- 3) 영화화되기까지 한 20년대 최독건의 『승방비곡』(《조선일보》, 1925)을 비롯하여 30년대 대표적인 대중소설들 『마도의 항불』(《동아일보》, 1932~1933), 『방랑의 가인』(《매일신보》, 1933), 『엄마』(《조선일보》, 1934), 『순정해협』(《조광》, 1936), 『찢레꽃』(《조선일보》, 1937), 『순애보』(《매일신보》, 1938), 『마인』(《조선일보》, 1939) 등은 ‘신문연재’ 장편소설이었다. 이것은 ‘신문소설=통속소설’이라는 인식까지 낳아서 당시 신문연재소설 혹은 장편소설에 대한 논의들이 분분했었다. 천정환은 한국 문학사·미디어사에서 소설과 신문의 관계는 매우 특별하다고 언급하며, 문학사에서 중요한 장편소설은 거의 신문에 연재되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천정환, 위의 책, 327쪽 참조.
- 4) 필자는 30년대 탐정소설에서 탐정, 희생자, 범인으로 구성되는 탐정소설의 줄기 이외에 불필요한 연애서사가 삽입되었다는 것에 대해 언급했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30년대 탐정소설의 특성이라 규명한 바 있다. 최애순, 「한국적 탐정소설로서 『엄마』의 가능성과 의의」, 『현대소설연구』, 37호(2008), 199~228쪽. 본 논문에서는 연애소설에 범죄서사가 개입된 양상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이런 일련의 글들이 누적되어 30년대 대중 장르의 혼합 양상에 대한 증명이 되리라 기대한다.

애소설에서 칼이나 독약으로 남성(주로 남편)을 살해한 여성은 당시 탐정소설에서 ‘犯人(女性犯罪者)’으로 등장한다. 본 논문에서는 당시 신문연재소설에서 여성을 범죄자로 만들었던 현상이 어떻게 야기된 것이며, 그것이 대중들에게 흥미를 끌었던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 방인근의 『마도의 향불』을 예로 들어 고찰해보기로 한다.

방인근은 1925년 이광수와 함께 《朝鮮文壇》을 창간했다. 그는 《朝鮮文壇》의 창간과 함께 30년대 신문연재소설작가로 유명했지만, 후대에는 거의 잊혀졌다.<sup>5)</sup> 30년대 『마도의 향불』, 『방랑의 가인』 등 新聞連載戀愛小說작가로 알려진 방인근은, 해방 후 『국보와 괴도』, 『살인범의 정체』, 『원한의 복수』 등 探偵小說을 창작하기 시작한다.<sup>6)</sup> 방인근의 소설은 구성이 미흡하거나 자극적인 소재를 차용한 ‘대중소설’로 인식되어 소홀히 다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의 소설은 당대의 가장 민감한 이슈를 건드려왔다. 가령, 『방랑의 가인』은 성악가 안기영과 여제자 김현순과의 실제 연애사건을 소재로 하였으며,<sup>7)</sup> 『마도의 향불』에서도 당대 유행하던 카

- 5) 1936년 삼천리사에서 발간한 『조선문학 명작선집』의 소설 구성목록에는 윤백남의 『대도전』, 최독건의 『승방비곡』, 방인근의 『노총각』 등이 포함되어 있다(천정환, 앞의 책, 433쪽). 방인근, 윤백남, 최독건은 당대 인기 작가였을 뿐만 아니라 방송 연출가, 연극 연출가, 영화 제작자, 잡지 편집인 등으로 당대인들에게 대단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1960~70년대에 발간된 근대한국문학전집 혹은 선집까지는 그래도 방인근, 윤백남, 최독건 등의 이름을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점점 후대로 오면서 문학전집 혹은 문학교과서에서 잊혀진 작가가 되어갔다. 1936년 발간된 목록에서 윤백남과 최독건은 그들의 대표작품이 수록된 것에 반해, 방인근은 별로 유명하지 않은 『노총각』이란 작품이 수록되었다. 당시 『마도의 향불』과 『방랑의 가인』이 이미 발표된 이후여서 이 작품 선택은 납득하기 어렵다. 당대 문인들은 방인근이 문단에서 어디까지나 《조선문단》의 창간자로 남아 있길 바랐던 것으로 보인다. 방인근의 대중소설 창작이 그의 경력에서 잠시 옆길로 비껴갔던 것이라 여겼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방인근은 30년대뿐만 아니라 50년대까지도 꾸준히 작품 활동을 했다. 그는 대중의 취향에 민감한 작가였고, 그런 면에서 그의 소설 역시 새롭게 평가받아야 한다.
- 6) 방인근의 작가로서의 이력은 김내성과 정반대의 길을 걷는다. 김내성은 30년대 탐정소설을 창작하다가 해방 이후 『청춘극장』, 『애인』, 『실락원의 별』로 대표되는 연애소설을 쓰기 시작한다. 김내성 역시 50년대 그의 연애소설이 상당한 인기를 끌었음에도, 연구자들에게 외면당하고 있다. 김내성은 연구자들에게 『마인』의 작가로서 기억될 뿐이다.
- 7) 당시 이 연애사건의 파장은 엄청났던 것으로 사료된다. 1936년 4월에 이들의 음악회가 사상 초유로 취소되는 등의 이례적인 일들이 벌어졌다. 당시 취소 기사는 그 면의 절반 분량이나 차지할 정도로 크게 보도되었다. 이들이 음악회를 벌이는 일에 대해서 여러 인사들이 반대하는 편지를 보냈으며, 안기영은 이에 대해 불쾌한 뜻을 비쳤다(『新春樂壇의 異變, 안기영 김현순 양인의 音樂會를 突然不許, 愛의 悲歌를 다시 부르게 된 放浪의 두 歌人, 社會各方面에 物議紛紛』, 《조선중앙일보》, 1936년 4월 12일). 소설 『방랑의 가인』에서 이 두 사람은 사랑의 도피를 벌이나 결국 ‘요부’ 여제자 ‘화숙’은 보복로부터 살해당하고, 광우는 본처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실제 사건의 주인공들은

폐와 백화점 등으로 대표되던 도시문화와 도시 이면에서 발생하던 범죄사건을 다룸으로써 식민지도시 경성을 그렸다. 따라서 방인근의 30년대 신문연재소설은 당대의 사회·문화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판단한다. 『마도의 향불』은 1970년 전집 발간을 위한 서정주의 추천사에서 이 작품이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의 작품 중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것으로 사료된다.<sup>8)</sup>

방인근의 『마도의 향불』은 1932년 11월 4일부터 1933년 6월 12일까지 《동아일보》에 총 154회 연재되었는데 未完이었다.<sup>9)</sup> 부득이한 사정으로 연재가 중단되었다가 1934년 啓明社에서 완결판으로 발간되었다.<sup>10)</sup> 윤정현은 영화화<sup>11)</sup>까지 된 방인근의 대표적 출세작인 『마도의 향불』에 대해 ‘치정과 범죄에 얽힌 대중적 통속소설’이라 하며, 이것은 그를 향후 통속작가로 재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성

분치에게 돌아가지 않고 행복한 보금자리를 꾸민다. 실제 사건과 다른 이 부분에 대해 윤정현은 ‘작가적 자아의 실상’ 때문으로 보고 있다[윤정현, 『방인근 소설에 나타난 작가적 자아의 실상』, 『한국 근대소설론고』(국학자료원, 2001), 31~50쪽]. 그러나 이는 이처럼 물의를 일으킨 불륜을 정당화할 수 없었던 당대 사회적 담론 때문이라고 짐작된다.

- 8) 1959년 한국문학전집에 포함된 방인근의 대표작은 『방랑의 가인』이었다. 그러나 1979년 민중도서에서 한국장편문학대전집으로 방인근과 김내성 두 작가의 작품을 묶었을 때 제1권이 『마도의 향불』이었다. 모두 10권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때 5권까지가 방인근의 『마도의 향불』, 『국보와 괴도』, 『고향산전』, 『새벽길』, 『새출발』이고, 다음의 5권이 김내성의 『실락원의 별』 상·중·하와 『에인』 상·하이다. 특이한 것은 이렇게 선별된 그들의 대표작들에 관한 연구가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김내성 역시 연애소설이 당대 인기를 끌어서 이렇게 묶였지만, 그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방인근은 『방랑의 가인』 작가로, 김내성은 『마인』의 작가로 알려져 있을 뿐이다. 『방랑의 가인』과 『마인』에 관한 연구 이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 9) 154회 연재되었음에도 마지막으로 실린 33년 6월 12일 당시 미완이었다. 6월 15일부터 박태원의 『半年間』이 연재되고 있다. 6월 12일자 《동아일보》 조간 4면에 실린 내용은 숙경의 姦夫였던 강택수가 체포되는 장면이다. 154회 연재되었다는 것은 김말봉의 『절레꽃』이 총129회 연재되었었다는 점을 상기해보면 상당히 오랫동안 긴 분량을 썼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장황한 분량은 『마도의 향불』의 뒷부분이 전반부와 확연히 구분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이는 독자의 인기로 힘입어 계속 연장해 나간 것으로 사료된다. 뒷부분 재판 관련 과정이 당시 다른 작품에 비해 장황하게 진행된 것도 연장연재 때문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 10) 1934년 4월 5일자 《동아일보》 ‘문단소식’란에 『魔都의 향불 完結』, 啓明社로부터 出版이란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다. 기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方仁根氏의 長篇小說 『魔都의 향불』은 일찍이 本紙에 연재되어 오다가 스토리의 展開가 興味の 絶頂에 達한때에 不得已한 事情으로 掲載을 中止하였든바 이번에 全部 完結하여 市内 光化門通 啓明社로부터 五白餘頁의 單行本으로 發行하기로 되었다한다.”
- 11) 1958년 영화화 되었는데, 이 때 ‘연애’가 아닌 ‘추리’, ‘음모’ 등의 서사가 키워드로 등극한다. 대중에게 『마도의 향불』은 숙경의 음모, 그 음모를 밝히는 과정이 구미에 당겼던 것이다.

을 띠고 언급했다.<sup>12)</sup> 김기림은 『마도의 향불』에 대해 당대 대중문화의 지배적인 코드인 “엽기 취미와 ‘에로티즘’을 가미하여” 일종의 각테일을 빚었다고 하였다.<sup>13)</sup> 이들은 『마도의 향불』에서 ‘연애’와 ‘범죄’의 결합을 공통적으로 언급한다. 한명환은 『마도의 향불』을 ‘연애 갈등형 유형’으로 파악하고, 여기에 가미된 범죄 서사가 당시 범람하던 ‘본부살해사건’의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했다.<sup>14)</sup> 그러나 30년대 ‘본부살해사건이 범람했었다’를 언급하는 데에서 그치고 있어, 본부살해사건이 당시 사회에 어떤 과장을 일으켰는지, 또한 작품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고찰하기는 어렵다. 그것은 속경의 범죄서사가 아닌 영철과 애희의 연애서사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이다.

『마도의 향불』이 독자의 흥미를 자극했던 요소는 영철과 애희의 연애서사가 아니다. 대중의 관심은 당대의 민감한 사회적 문제였던 속경의 ‘본부살해’에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당시 이슈화되었던 본부살해사건과 대중에게 인기를 끌었던 『마도의 향불』에 묘사된 속경의 범죄가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고찰해보기로 한다. 그것은 당대 대중소설<sup>15)</sup>에 등장하는 범죄자가 왜 ‘여성’이었는지를 설명해주는 것이다. 또한 한국 대중소설에서 팜프파탈의 이미지가 어떻게 고착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기도 하다. 치정, 살인, 증거, 과학적 수사 등의 범죄서사를 가미한 『마도의 향불』은, 방인근이 해방 후 탐정소설을 창작하기 시작한 것이 전혀 뜬금없는 일이 아님을 보여준다. 따라서 『마도의 향불』은 그의 작품 전체의 경향을 이해하는 데도 중요하다. 식민지시기 본부살해사건이 『마도의 향불』에서 어떻게 재현되었는지 살피기 위해, 본부살해관련 신문 기사를 둘러싼 담론의 양상과 30년대 신문 연재소설을 함께 살피기로 한다. 특별히 30년대 신문연재소설로 한정하는 것은, 『마도의 향불』이 연재된 시기와의 연관성 때문임을 밝혀둔다.

---

12) 윤정현, 「方仁根 小説에 나타난 作家的 自我的 實相」, 『한국 근대소설론고』(국학자료원, 2001), 38~39쪽.  
 13) 김기림, 「신문소설 ‘올림픽’ 시대」, 『삼천리』, 1933. 2.  
 14) 한명환, 「1930년대 신문소설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1995). 한명환은 30년대 신문소설 중 ‘연애 갈등형 소설’의 유형으로 『마도의 향불』과 『절레꽃』을 들었다. 본론의 2장에서 『마도의 향불』 부분 참조.  
 15) 여기에서 말하는 대중소설이란 대중이 많이 읽던 소설을 지칭하는 것으로 30년대 여기에 해당하는 소설은 대부분 ‘신문연재소설’이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의 대중소설은 신문연재소설을 지칭한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 II. 한국 팜프파탈의 기원과 식민지조선의 여성범죄

### 1. 懲惡對象으로서의 여성: 繼母와 妾

팜프파탈(*femme fatale*)은 프랑스어로 ‘숙명적인, 운명적인’ 여성이라는 의미이다. 팜프파탈은 19세기 낭만주의 작가들에 의해 문학작품에 나타나기 시작한 이후 미술, 연극, 영화 등 다양한 장르로 확산되어 현대 대중매체에서도 유용하게 소비되고 있는 이미지이다. 남성을 파멸 혹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 상황으로 몰고 가기 때문에 ‘악녀’ 혹은 ‘요부’라는 용어로 번역된다. 요약하자면, 사랑에 빠진 남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숙명의 여인이다.<sup>16)</sup> 역사적으로 팜프파탈의 이미지가 유행하게 된 배경은 당대의 사회·문화적인 맥락과 긴밀하게 연관을 맺었다. 여성의 자유가 보장되고 권위가 상승하면 상대적으로 남성 중심의 사회는 위협을 받는다. 이에 유용하게 여성을 옹호할 수 있었던 수단은 바로 ‘정숙한 여성’의 이미지였다. 상대적으로 정숙하지 않은 여성은 ‘징벌’의 대상이었다. 사회적 본보기로 가해지던 징벌은 결국 여성에게 ‘정숙’하라는 훈계였다. 세기를 거듭하면서 팜프파탈의 이미지는 자연스럽게 정숙한 여성과 대비되었고, 정숙하지 못한 여성에게 가해지는 ‘징벌’은 당연하고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징벌’은 대중에게 팜프파탈의 이미지를 공고화하여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익숙해지도록 만들었다. 팜프파탈은 ‘매혹-징벌-정숙’의 과정이 거듭되고 반복되면서 구축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여성과 사랑에 빠져 인생이 꼬인 남성들은 원인을 모두 ‘유전적으로’ 악마의 피가 흐르는 ‘팜프파탈’에게 돌려버림으로써 죄책감으로부터 해방되었다.

남성들이 허구화한 ‘타고난’ 요부형은 대중을 오래전부터 ‘익숙한’ 이미지로 설득한다. 한국소설의 ‘악녀’ 역시 식민지시기에 새롭게 등장한 ‘낮선’ 인물이 아니다. 勸善懲惡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구현하는 고전소설 속 가정에서 ‘懲惡對象’은 여성이다. 한국 고전소설에서 ‘악녀’의 전형적인 이미지는 『장화홍련전』<sup>17)</sup>의 ‘계

16) 이명옥, 『팜프 파탈: 치명적 유혹, 매혹당한 영혼들』(다빈치, 2003), 263쪽 참조

17) 염상섭은 ‘통속소설’의 범주에 『춘향전』, 『심청전』, 『장화홍련전』 등이 속한다 하였다. 다시 말해 고전소설을 읽는 전통적 독자층을 통속소설 독자로 상정하고 있다(『조선과 문예, 문예와 민중』,

모'와 『사씨남정기』18)의 '첩'이다. 당시 고전소설과 구활자본 소설 독자들은 '勸善懲惡'과 '엽기적인 사건'을 즐겼다.<sup>19)</sup> 계모와 첩이 등장하는 '가정비극' 유형의 고소설들은 근대애정소설의 물결 속에서도 여전히 가정부인들의 최대의 읽을거리였다.<sup>20)</sup> 전처소생의 딸 장화가 낙태했다는 누명을 씌워 자신의 아들 장쇠에게 끌고 가서 죽이라고 사주한 『장화홍련전』의 계모 허씨와 간악한 말로 남편을 미혹케 하여 본처를 내쫓은 『사씨남정기』의 첩 교씨는 후대를 위해서도 본보기로 반드시 벌을 내려야 마땅한 악녀이다.

- ① 흉녀의 죄상은 만만볼척하니, **흉녀는 능지처참하여 후일을 징계하며** 그 아들 장쇠는 교하여 죽이고 장화 형제의 혼백을 신원하여 비를 세워 포하여 주고 제 아버지는 방송하라.<sup>21)</sup>
- ② 상서 더욱 노하여 둘레의 하인들에게 명하여 교녀의 가슴을 해치고 엄통을 빼내라 하니, 사씨 부인이 말했다./ “지은 죄 엄중하나 그래도 상공을 모셨던 몸이니 죽여도 시체를 온전하게 하소서.” 상서가 부인의 말에 감동하여 **교녀를 동쪽 저갯거리에 끌어내다가 모두가 보는 앞에서 죄상을 널리 알리고 목을 매달아 죽였다.**<sup>22)</sup>

---

《동아일보》, 1928년 4월 10일~17일), 이 글에서 염상섭은 구활자본 고소설을 읽는 가정부인으로 대표되는 여자들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가 읽은 고소설이 『유충렬전』이나 『소대성전』, 『구운몽』같은 것들이 아니라 여성독자들이 즐겨 읽었던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가 언급한 『춘향전』, 『심청전』, 『장화홍련전』은 당시 여성들의 눈물을 자극하거나 신파적인 요소를 내뿜는 대표적인 통속소설로 보아도 무방하다고 본다. 또한 『장화홍련전』은 1936년 홍개명 감독 작품으로 영화화되기도 했다. 이것은 당시 유행하던 그로, 즉 엽기 코드가 '귀녀로 분장한 장화'와 같은 고전소설의 소재와 맞아 떨어진 경우였다고 한다. 천정환, 앞의 책, 404쪽.

- 18) 김만중의 『사씨남정기』는 원래 대단히 복잡한 정치적 배경 아래 창작된 소설인데, 당시 독자들은 '권선징악'과 '사건의 엽기성' 때문에 읽었다 한다. 당시 널리 읽히던 가정소설 유형은 대부분 '처첩갈등'을 다뤘다. 천정환, 위의 책, 86-87쪽.
- 19) 천정환, 위의 책, 87쪽.
- 20) 1929년 조선총독부의 『평양부: 조사자료 제3집 생활상태조사』에서 평양지역 주민의 직업별 독서 경향과 인기소설을 조사한 것에 따르면, 소설 중에서는 '연애'소설이 가장 많이 읽힌 것으로 되어 있고, 그 주된 독자는 '학생'과 '부인'이라 한다. 흥미로운 것은 『무정』과 『강명화실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고소설'이라는 사실이다(천정환, 위의 책, 91쪽). 학생들이 모험, 탐정, 연애를 즐겼다면, 가정부인들은 '가정비극' 유형을 즐겼다고 한다. 따라서 당대 대중매체의 수용 코드는 가정비극과 연애, 모험, 탐정이었다고 한다. 김동인, 「신문소설은 어떻게 써야 하나?」, 《조선일보》, 1933년 5월 14일.
- 21) 全圭泰(編), 『한국고전문학대전집1』(世宗出版社, 1970), 444쪽.

예문 ①은 『장화홍련전』의 사또가 흥녀 허씨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장화 형제의 억울함을 풀어준 후에 가한 벌이며, 예문 ②는 『사씨남정기』에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평온한 가정을 되찾은 유연수가 악인 교녀에게 내리는 사형(私刑)이다. 두 예문 모두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형식의 처벌 방식이 강조된다. 예문 ①에서 배죄수는 풀려나고 허씨는 능지처참된다. 예문 ②에서 첩의 간교에 속아 처를 내쳤던 유연수는 행복한 가정을 되찾고 교녀는 죽임을 당한다. 懲惡對象은 철저하게 여성이다. 그러나 계모 허씨와 첩 교씨는 진정한 팜프파탈은 아니다. 남편이 파멸이나 죽음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장화홍련전』과 『사씨남정기』에서 계모나 첩이 간악한 흥계를 꾸미는 목적은 ‘남편의 애정’을 차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고전소설의 계모와 첩은 근대적 의미의 팜프파탈 이미지와 결별한다. 근대의 팜프파탈은 ‘남편의 애정’을 차지하기 위해 전처소생을 죽이거나 본처와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다. 오히려 남편을 파멸이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독부(毒婦)’이다. 식민지시기 팜프파탈은 매혹적인 ‘요부’와 치명적인 ‘독부’의 이미지가 결합되어 탄생한다.

『장화홍련전』의 계모 허씨는 “두 볼은 한자가 넘고 눈은 통방울같고 코는 질병 같고 입은 메기같고 머리털은 돼지털같고 키는 장승만 한” 추녀이다. 남성을 유혹하는 외모를 지니지 못하여 요부로서 자격미달이다. 『사씨남정기』에서 ‘악녀’로 등장하는 첩 교씨는 『장화홍련전』의 계모 허씨와는 달리, 빼어난 미를 겸비한 ‘요부(妖婦)’이다. “교 씨 한림과 부인께 절하고 좌에 앉으니, 모두 보매 얼굴이 아름답고 거동이 경첩하여 해당화 한 송이가 아침 이슬을 머금고 바람에 나부끼듯 하매 모두 칭찬치 아니할 이 없으되”라고 일컬을 정도로 용모가 출중함을 강조한다. 교씨를 악녀로 만들기 위해 채택된 방법은 바로 ‘색기’를 이용하는 것이다. ‘정조’를 함부로 다룬다는 것, 남편 이외에 情夫를 둔다는 것 자체가 이미 벌을 받아 마땅하다. 미모와 색기가 결합되어 교씨는 ‘요부’로 탄생한다. 첩 교씨는 첫째 매혹적인 요부라는 점, 둘째 타고난 음녀라서 간부를 두었다는 점, 셋째 간부와 공모하여 본부살해를 계획한다는 점에서 팜프파탈의 모든 조건을 갖춘 듯 보인다. 교씨의 팜프파탈로의 이미지 구축은, 쫓겨나서도 본부(本夫)에 대한 한결같은 마음을

22) 김만중, 『사씨남정기』(겨레고전문학선집22)(보리, 2007), 150~151쪽.



유지하는 ‘본처’ 사씨로 인해 실패한다. 식민지시기 대중소설에서 본부(本夫)는 고전소설에서와 달리 더 이상 ‘본처(本妻)’로부터 구원 받지 못한다. 따라서 식민지시기 본부(本夫)는 최대의 위기를 맞는다.

## 2. 식민지조선의 본부살해와 그것을 둘러싼 담론의 양상

한국 팜프파탈은 봉건적 가정의 위상이 흔들림으로써 탄생한다. 식민지시기 조선의 범죄 양상을 살펴보면 남성범죄는 절도가 가장 많았던 반면, 여성은 살인범죄가 가장 많았다.<sup>23)</sup> 여성의 살인범죄에서 살해대상은 주로 본남편이었다.<sup>24)</sup> 이런 현상에 대해 각 신문들은 다른 나라에서는 보기 힘든 ‘조선 특유의 범죄’라 일컬었다.<sup>25)</sup> 식민지조선의 여성범죄 본부살해는 당대 최고의 기사거리였다. 각 신문들은 앞 다투어 여성의 본부살해와 그에 따른 재판부의 판결을 다루었다. 그러나 당대 본부살해는 (1)신문기사 (2)신문이나 잡지의 논설 (3)신문연재 대중소설 속에 구현된 양상이 각기 달랐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대중소설 속에 구현된 본부살해 범죄이다. 그러나 실제 사건과 괴리를 보이는 대중소설 속 본부살해범이 식민지시기 팜프파탈의 이미지로 대중에게 각인된다. 대중소설 속에 구현된 본부살해범에 대한 이미지는 다음 장에서 논하기로 하고, 우선 각 신문기사에서 다루었던 (1) 본부살해사건 자체와 (2)그것을 둘러싼 담론들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30년대 가장 민감한 문제<sup>26)</sup> 중에 하나였던 본부살해는 20년대부터 신문에 기사로 떠오르기 시작하다가 30년대로 넘어오면서 심각한 사회 문제로 간주되기에 이른다. 『마도의 향불』이 연재되었던 《동아일보》를 중심으로 본부살해 기사를 살펴보면 30년부터 급속히 증가하여 31년, 32년에는 한 달에 한 번 꼴로 벌어진다.<sup>27)</sup>

23) 류승현, 「일제하 조혼으로 인한 여성범죄」, 박용욱(편), 『여성: 역사와 현재』(국학자료원, 2001), 374쪽.

24) 류승현, 위의 논문, 375쪽.

25) 김정실, 「본부살해의 사회적 고찰: 조선의 특수범죄-본부살해의 참극-젊은 여성들은 왜 법정에서 나?」, 《동아일보》, 1933년 12월 9일부터 12월 24일까지 연재; 「法廷에 反映된 朝鮮女性」, 《조선일보》, 1932년 2월 19일.

26) 본부살해범죄는 10년대부터 등장하여 20년대 증가추이를 보이다가 30년대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담론화된다. 따라서 담론화가 되었던 30년대에 본부살해가 가장 극심하였다는 가정 하에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27) 「本夫殺害未遂, 嬰재물을 밥에 석거먹여, 大同郡에 사는 尹永權의 妻 盧姓女」, 《동아일보》, 1921년

本夫殺害犯 無期를 求刑—술먹고 때리는 남편을 죽이고 일도외주는 姦夫와 共謀殺害

平壤覆審法院에서

술만먹고싸리기만하는 본부인정승률(鄭承律)이가생일술에잔뜩 취하여 자는것을 간부와 공모하고 협력하여 수건으로목을매어둘이한숫씩당기어즉사시킨살인독부박죽(朴竹)에대한 공판은 지난십팔일오후한시 평양복심법원에서 영도(永島) 재판장주심석천(石川)검사립회하에 개정되었는데 전과박죽은 양덕군쌍룡면 북창리에 거주하며동리에서는 최봉한과 오래전부터정을통하게되었는데 그정을통하게된동기는본부는 촌훈장으로 수입도업고늘술이 장취하여 부인을 싸리기를 업으므로매 반감이났고간부는 박죽이의 하는농사도 도와주고 모든생활의 어려움을도이준까닭이라는데 마침김혼밤중에본부자는것을 기회로 이가튼참아할수 업는 일을한 사건으로 박죽은 전후모든것을 자백하고로**검사로부터 두명에게모 다루기(無期)구형**을하앗다는데언도는이십삼일이라더라<sup>28)</sup>

5월 4일, 「본부를 살해하고 사형을 불복, 년놈은 공소」, 《동아일보》, 1921년 7월 19일; 「姦夫姦婦의 死刑執行, 병신이된 본부를 살해한 白玉信과 그 간부」, 《동아일보》, 1922년 2월 27일; 「姦夫와 協力하여 本夫를 殺害한 毒婦, 두달만에야 사실 발각 테포」, 《동아일보》, 1922년 9월 16일; 「본부를 살해하랴든 간부와 간부테포」, 《동아일보》, 1923년 4월 6일; 「一審 無期懲役이 上訴하여 死刑, 본부를 살해한 간부와 간부」, 《동아일보》, 1926년 12월 15일; 「本夫 殺害後 逃亡, 남편을 죽이고 간부와 가치 아들들은 다리고 다러났다」, 《동아일보》, 1927년 4월 27일; 「間夫와 精이 들어 本夫所生殺害, 사년전부터 간통한 것이 발각, 本夫는 姦通殺害罪로 告訴」, 《동아일보》, 1929년 6월 11일; 「本夫殺害 婦에 死刑을 求刑 술먹는 남편 죽인 안해에게, 姦夫에게는 十年刑」, 《동아일보》, 1929년 6월 16일; 「本夫를 殺害코자 食物에 置毒, 본부가 미우라 리혼도 못하고 (?)이 未然에 發見」, 《동아일보》, 1930년 2월 16일; 「姦夫婦共謀 本夫를 殺害」, 《동아일보》, 1931년 1월 17일; 「本夫殺害犯에 無期役言渡, 간부 간부에 무죄징역언도, 共謀者에게 十二年役」, 《동아일보》, 1931년 2월 18일; 「本夫殺害事件 最高死刑言渡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 判決利郡 被告騷動」, 《동아일보》, 1931년 4월 29일; 「現場을 發見 姦夫를 打殺, 자기안해와 간통하는 것을 殺害 本夫 (?) 逮捕」, 《동아일보》, 1931년 8월 30일; 「痴情關係로 生死岐路에 檢사는 역시 사형구형 本夫殺害犯控判」, 《동아일보》, 1931년 9월 29일; 「本夫殺害犯 月餘 만에 逮捕 屍體는 解剖에 부치(北鎭)」, 《동아일보》, 1932년 1월 13일; 「本夫殺害한 姦夫婦遂逮捕, 도망가서 남의 집 고용, 奉化犯人을 忠州서」, 《동아일보》, 1932년 1월 14일; 「本夫殺害犯人 一審에서 死刑, 공판정에서 사실을 부인 妻 뺏고져 本夫殺害, 楊平 朴永德」, 《동아일보》, 1932년 2월 29일; 「本夫殺害한 姦夫婦 送局(新義州)」, 《동아일보》, 1932년 6월 2일; 「本夫殺害犯 崔寶玉 再審을 要求」, 《동아일보》, 1932년 12월 14일.

28) 《동아일보》, 1929년 7월 20일.

위의 내용은 본부살해사건을 다룬 기사이다. 당시 본부살해 관련 기사의 특징은 크게 네 가지로 들 수 있다. 일단 제목에 남편살인, 남편을 죽임 등과 같은 표현 대신 ‘本夫殺害’ 용어를 반복해서 사용한다. 그럼으로써 식민지시기 본부살해는 특정범죄를 지칭하는 새로운 용어로 급부상한다. 두 번째 특징은 부제목으로 붙은 ‘姦夫와 共謀殺害’에서 볼 수 있듯, 당시 본부살해는 공모자가 있었고, 그 공모자는 간부였다는 것이다. ‘姦夫姦婦의 死刑執行, 병신이된 본부를 살해한 白玉信과 그 간부’, ‘본부를 살해하려든 간부와 간부테포’, ‘姦夫婦 共謀 본부살해’ 등의 기사제목처럼 대부분의 본부살해범은 간통죄를 겸하고 있었다. 세 번째는 ‘술만 먹고 때리기만 하는’ 남편을 살해한 여성의 이름 앞에 붙은 ‘殺人毒婦’라는 수식어이다. 기사를 읽어보면 술만 먹고 때리는 남편을 살해한 여성은 살인죄를 범했지만 동정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남편이 술만 먹고 때렸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남편을 ‘살해했다’는 것이다. ‘간부와 협력하여 본부를 살해한 독부, 두달만에야 사실 발락 테포’<sup>29)</sup>, ‘惡毒한 아내-抱病男便毒殺’<sup>30)</sup>과 같이 제목부터 ‘惡毒한’, ‘毒婦’ 등의 자극적인 수식어를 본부살해범에 붙이기도 했다.

또한 본부살해 관련 기사에서는 반드시 裁判 결과를 공개했다. 대부분 본부살해범은 死刑 또는 無期懲役을 언도받았다. ‘본부살해범에 무기역언도, 간부 간부에 무기징역언도, 공모자에게 12년형’, ‘본부살해범 사형을 구형’ 등과 같은 기사제목이 눈에 띈다.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라는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고 신문을 통해 공개적으로 널리 알렸음에도, 본부살해는 30년대 후반까지 줄어들지 않고 빈번히 일어났다. 한편에서는 본부살해범에 무기징역을 언도하고 있었던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악독한 여성이 간부와 공모하여 여전히 본부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었다.<sup>31)</sup> 당시 신문기사의 특징들을 종합하여 요약하면 ‘姦夫와 共謀하여 本夫를 殺害한 毒婦에게 死刑이나 無期懲役 구형’으로 압축된다. 본부살해의 동기나 이유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한 바가 없다. 설사 위의 지문에서와 같이 ‘남편이 술 마시고 때렸다’라는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殺人毒婦’의 이미지에 묻혀 버리고 만다.

29) 《동아일보》, 1922년 9월 16일.

30) 《동아일보》, 1931년 2월 18일.

31) 《동아일보》, 1931년 2월 18일자에는 「本夫殺害犯에 無期懲役言渡, 간부 간부에 무기징역언도, 共謀者에게 十二年役」와 「惡毒한 아내-抱病男便毒殺」이 바로 옆에 나란히 붙어서 실리고 있었다.

법정 최고형이 언도됨에도 줄어들지 않는 본부살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간주되어 공론화되기에 이른다.<sup>32)</sup> 이채롭게도 본부살해 범죄에 대한 심층적인 조명에 관한 글들은 1933년에 연재되었으며, 『마도의 항불』이 연재된 것도 1932·33년이었다. 본부살해를 사회적으로 고찰한 글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은 바로 범죄자의 심리적인 측면, 즉 살해동기이다. ‘본부살해가 왜 조선에서만 빈번하게 발생하는가’에 초점을 맞춘 이 글들은, 본부살해 기사와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 이들은 식민지조선의 본부살해 원인으로 ‘조혼제도’를 공통적으로 들었다. 조혼의 폐해와 악습으로 인한 본부살해범은, ‘잔혹한 毒婦’에서 ‘불쌍한 小婦’로 변모된다. 신문이나 잡지의 논설에서는 범죄가 무언지도 모르는 나이에 시모나 남편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여 법정에 서게 된 小婦를 한없이 동정했다.

#### 무엇이 남편을 죽이게 하였나?—오 애끓은 여성들!

서대문형무소 여감에잇는죄수서정인의말

“여덟살에 밋머누리로 갓엇댕어요. 열세살적부턴가마요. 남편될려는 권서방이 몰래와서 잠을 못자게했어요. 견딜수잇나요. 그리고 나중에는 대낮에도 그랫는데 집안사람들은 못본척하고 슬슬피하겠지요. 남자의 나이요? 잘 몰라도 스물다섯이라나마요. 죽일려고나했나요. 내가 죽겠으니 그런게지요.” 살해할 때 연령이 十七세이엇다하니 철없는가슴이 몸동이와 아울러 五年동안 남자의 수욕을 채우는것이되다가 끝끝내 못견디게되어 그러케되엇다합니다.<sup>33)</sup>

위의 논설을 살펴보면, 신문기사에서 강조되던 것들(독부 이미지, 간부와 공모)이 누락되고 대신 조혼, 특히 민머누리제도의 폐해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32) 「法廷에 反映된 朝鮮女性」, 《조선일보》, 1932년 2월 19일. 30년대 초 극심한 사회적 문제로 이 슈화되다 33년 본부살해관련 논설들이 대거 쏟아져 나왔다. 김정실, 「本夫殺害의 社會的 考察」, 《동아일보》, 1933년 12월 9일~12월 24일(전 13회); 「朝鮮의 特殊犯罪, 本夫殺害의 慘劇」, 《조선중앙일보》, 1933년 10월 9일; 「피로 물들인 통계, 年年 증가의 경향, 本夫殺害方法도 各樣各樣, 早婚의 弊害와 罪惡(2)」, 《조선중앙일보》, 1933년 10월 11일; 工藤武城(경성부인원장), 「朝鮮特有의犯罪本夫殺害犯의婦人科學的考察」, 《조선》 213호, 1933년 2월. 이후 8월까지 총 7회 연재; 林耕一, 「朝鮮의 犯罪相」, 《조선일보》, 1933년 2월 5일부터 2월 19일까지 12회 연재.

33) 김정실, 「여성범죄 본부살해, 무엇이 남편을 죽이게 하였나? 오 애끓은 여성들!」, 《동아일보》, 1933년 12월 14일, 조간 6면.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부살해범죄는 유전적으로 타고난 선천성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 환경이 조성한 기회성 범죄임을 역설하고 있다.<sup>34)</sup> 간부와 공모했다는 점은 《동아일보》에 실린 김정실의 글에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제하의 신문기사를 고찰한 후대 류승현의 「일제하 조혼으로 인한 여성범죄」 논문에서 여성 조혼은 남편이 연하인 경우와 연상인 경우로 구분되는데, 어린 남편과 살게 된 성숙한 부인은 간부를 두기도 했고, 간부와 도망하기 위해 남편을 살해하기도 했다고 한다.<sup>35)</sup> 《조선일보》의 林耕一은 본부살해를 조선의 참극이라 언급하며, 사랑 결핍의 매매결혼인 조혼 때문에 간통이 생기고 간부간부를 죽이는 소동이 생기는 것이라 한다.<sup>36)</sup> 신문마다 약간씩 차이를 보이지만, 신문논설에서 법정에 서는 본부살해 여성은 조혼으로 인한 ‘불쌍한 소부’의 이미지가 압도적이었다. 이는 현진건 단편 「불」(《개벽》, 1925)의 ‘순이’이다. 낮에는 시어머니의 학대로, 밤에는 남편의 성적학대로 시달리는 열다섯 살 순이는 시댁에 불을 지른다. ‘순이’는 고스란히 30년대 담론의 장에 등장하는 어린 나이에 법정에 선 ‘불쌍한’ 본부살해범이었다.

당대 최고의 이슈로 떠올랐던 본부살해는 ‘殺人毒婦’와 ‘불쌍한 小婦’라는 정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식민지조선의 본부살해범은 30년대 대중소설에서 또 한 번 새로운 모습으로 등장한다. 대중소설은 상반되는 의견 속에서 ‘殺人毒婦’의 이미지를 선택했다. 한국 팜프파탈은 신문이나 잡지에 등장하는 본부살해범과 대중소설 속에 구현된 본부살해 여성과의 ‘차이’로부터 탄생한다. 30년대 신문연재소설 속에 구현된 본부살해범은 신문기사의 殺人毒婦와는 또 달랐다.

### III. 『마도의 향불』에 삽입된 本夫殺害와 팜프파탈로서의 속경

#### 1. 음탕한 속경과 정숙한 애희의 대비

34) 김정실, 「본부를 살해한 여성은 원래 악독한 사람이었는가, 환경은 어떠하였나, 《동아일보》, 1933년 12월 23일, 조간 6면.

35) 류승현, 「일제하 조혼으로 인한 여성범죄」, 『여성: 역사와 현재』(국학자료원, 2001), 357~394쪽.

36) 林耕一, 「朝鮮의 犯罪相4」, 《조선일보》, 1933년 2월 8일.

『마도의 향불』에서 숙경의 범죄는 ①애희의 정조유린사주와 ②본부 김국현 살해이다. 애희의 정조유린사건을 계기로 『마도의 향불』은 전·후반부로 나뉜다. 따라서 전반부는 영철과 애희의 연애서사와 애희의 정조유린을 사주하는 숙경의 성격을 중심으로 전개된다. 작품의 전반부에서 계모 숙경과 전처소생 애희는 미묘한 신경전을 벌인다.

- ① 그리고 제일에 집에 가기가 싫어, 아이 그 살찬 계모! 그 얼굴에 무지개처럼 선 살기! 아마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이 보이지 아니 할꺼야. 아이 몸서리나! 어머니! 어머니! 난 어머니가 그리워 학교에서 하학하면 어머니 계신 우리 집에 가기가 얼마나 즐거웠던고...37)
- ② 숙경이 학생 차림을 하고나니 다섯 해는 더 젊어 보였다. 언뜻 멀리서 보면 애희나 숙경이나 나이가 거진 같은 것으로 보게 되었다. 그보다도 애희는 살이 희고 볼이 두텁지 못한테 숙경은 불그레하고 살이 찌서 청춘이란 점에서는 숙경이 우세일는지도 몰랐다(1권, 26쪽).

예문 ①에서 애희는 계모에 대한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여학교에 다닐 만큼 자랐음에도 계모가 있는 집으로 가기 싫어하는 애희의 심리묘사는 『장화홍련 전』에서 계모와 전처소생의 관계를 연상시킨다. 그러나 예문 ②에서 숙경과 애희의 외모가 비교된다. 예문 ②에 따르면 계모 숙경이 애희를 미워한다면, 그것은 애희가 자기보다 매혹적이기 때문일 것이다. 애희가 청초한 미를 가졌다면, 숙경은 ‘육감적’이다. 애희가 숙경을 싫어하는 것은 계모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숙경이 자신의 애인 영철을 유혹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영철은 애희를 사랑하지만 숙경의 매혹에 압도당한다. 숙경이 사준 양복과 목도리를 두르고 나타난 영철에게 애희는 막연한 불안과 위기의식을 느낀다. 영철은 장래의 장모가 사준 것이라 답하지만 애희에게 죄책감을 느끼고, 애희는 아무리 계모라도 설마 그러리라 싶어 애써 그런 감정들을 외면한다. 『마도의 향불』은 고전소설과 같이 계모 숙경과 전처소생 애희의 평탄치 못한 관계를 드러낸다. 그러나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숙경의 요부

37) 방인근, 『마도의 향불』(한국장편문학대선집1)(民衆圖書, 1979), 19쪽. 이후의 『마도의 향불』인용문은 면수만 표시하기로 한다. 다만 1권과 2권이 있어 혼동되므로 ‘1권 19쪽’과 같이 표시하기로 한다. 인용문에서의 강조는 필자에 의한 것임을 미리 밝혀둔다.

적인 성격이다. 요부 숙경을 교묘하게 계모의 이미지에 덧씌워 놓음으로써, 독자는 이미 계모 숙경이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숙경이 애희의 정조유린을 사주한 사건은 표면적으로는 남편의 재산을 노려 전처소생 애희를 집에서 몰아내고자 한 것이다. 그러나 애희가 영철과 연애하는 사이란 걸 알고 있으면서도 이달이란 작자와 결혼시키려 한 숙경의 의도에는, 젊은 남자 영철을 향한 욕망이 배어 있다. 이쯤에서 숙경은 고전소설의 계모와는 차별된다. 『장화홍련전』의 계모가 전처소생을 시기하여 죽이는 사건은 남편의 재산이나 애정을 독차지하고 싶은 욕심 때문이다. 그러나 『마도의 항불』의 숙경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전처소생을 시기한다. 식민지시기 여성에게 가하는 징벌은 철저하게 ‘정조’ 관념에 의존한다. 전처소생의 애인까지 유혹하는 숙경은, 정숙한 가정부인의 이미지가 아니라 농염한 요부의 이미지로 굳어진다. 농염한 요부인 숙경은 애희를 집에서 내쫓은 뒤 본격적으로 본부살해 계획을 세운다. 숙경이 남성을 유혹하는 농염한 요부이면서 남편을 살인하는 잔혹한 독부로 묘사되는 반면, 정조가 유린당한 애희는 한없이 불쌍하고 가엽게 그려진다. 독자에게 애희는 숙경의 간악함 때문에 정조가 깨졌지만 영철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간직한 정숙하고 고결한 여성의 이미지이다. 『마도의 항불』에서 숙경과 애희는 계모와 전처소생의 관계를 넘어서서 음탕한 여성과 정숙한 여성의 대비를 보여준다. 음탕한 여성과 정숙한 여성의 대비는 30년대 후반 신문연재소설에서 권선징악의 구도를 유지하기 위해 반복된다. 그것은 자유연애를 주장하면서도 여성의 정조를 문제시하던 식민지시기 모순된 근대의 반영이었다.

애희의 정조유린사건은, 숙경의 범죄를 내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다. 숙경은 이 사건으로는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는다. 이 사건은 영철로부터 “요부 독부 같으니!”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살인범이 되지 못했던 애희와 본부를 살해하는 숙경을 대비시키기 위해 삽입된다. 이달에게 정조를 유린당하기 직전, 애희는 옆에 놓인 과도로 그를 찌르고자 하지만 실패한다. 이달을 찌르고 살인범이 되는 환상만으로도 두려워서 몸서리를 치는 애희는, 살인범이 되는 대신 정조가 깨지는 편을 택했다. 식민지시기 여성 살인범은 아무리 동정의 여지가 있다 하더라도 ‘잔혹한 독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것은 같은 상황에 처한 다른 여성들은 참고 사는데, 살인을 저지른 당사자는 유별난 사람이라는 인식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

다.<sup>38)</sup> 30년대 신문연재소설에서 살인을 저지른 유별난 여성은 ‘음탕한’ 여성이었다. ‘음탕한’ 여성을 ‘살인범’으로 그리면서, 본부살해법의 처벌에서 ‘정숙’ 혹은 ‘정조’라는 봉건적 가치를 기준으로 내걸었다.

## 2. 숙경의 本夫殺害와 봉건적 가정의 危機

『마도의 향불』의 숙경은 본래 국현의 ‘妾’이었다. 그러다 본처가 죽자 가정부인으로 등극한다. 『마도의 향불』에서 본처는 숙경이 첩으로 있을 때조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이미 죽어 있었다. 따라서 ‘妾’ 숙경의 경쟁상대는 『사씨남정기』에서처럼 본처가 아니다. 가정부인으로 등극한 숙경의 경쟁상대는 바로 ‘本夫’ 김국현이다. 숙경의 본부 김국현 살해는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된 범죄인 ‘모살(謀殺)’이다.<sup>39)</sup> 본부살해가 우발적 범행인 경우 살해방법으로 칼이나 흉기를 택한 경우가 많았다.<sup>40)</sup> 이와 반면에, 모살인 경우 살해방법으로 毒殺을 가장 많이 택했고, 대부분 공범자가 있었다. 공범자와 함께 범행을 계획하는 謀殺은 우발적 범행보다 훨씬 무섭고 악독한 인상을 주었다. 『마도의 향불』 차례에서 4장의

38) 장용경, 「식민지시기 본부살해사건과 ‘여성주체’」, 『역사와문화』, 13(2007), 108쪽.

39) 일본의 「신률강령」의 ‘인명률(人命律)’의 ‘모살(謀殺)’ 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다고 한다. “무릇 사람을 모살(혹은 마음에서 피하고, 어떤 때는 사람에게 시켜서 피하는 것 구별이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사람에게 시켜서 피하는 것을 말한다) 함에, 음모자는 참수형, 공범이면서 가담한 자는 교수형, 가담하게 한 자(가담한 자부터 형벌을 한 등급씩 감한다)는 귀향 3등급”으로 나누어서 미리 계획을 세워 사람을 살해한 경우, 주범은 참수형, 공범은 교수형, 한패이기는 하지만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은 귀향의 벌을 내렸다 한다(가메이 히데오(자)김춘미(역), 『明治文學史』(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57-58쪽). 단독범행인 경우는 음모(주범)와 가담(공범자) 두 가지의 죄를 겸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단독범행인 경우는 모살일 수도 있고 우발적 살인일 수도 있지만, ‘공범자가 있는 경우’는 우발적 살인보다 모살일 경우가 짝였다. 공범자와 함께 모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이다. 본부살해범죄에서 간부와 함께 공모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계획된 범죄이기 때문에 훨씬 무섭고 악질적인 범죄라고 간접적으로 말해주는 것이다.

40) 당시 『마도의 향불』 이외에도 본부살해범죄를 다루는 소설들이 있었다. 채만식의 『탁류』 역시 채봉이가 형보를 부역칼로 살해한다. 그런데, 이 경우 채봉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옆에 보이는 흉기를 들고 살인을 저질렀다. 그래서 동생과 사랑하던 사람이 들이닥쳤을 때 자기가 무엇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게 머리는 헝클어지고 옷매무새도 흐트러진, 마치 귀신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었다. 『마도의 향불』의 숙경이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이런저런 머리를 굴리며 형사들의 취조를 감당해내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숙경은 본부 김국현을 흉기가 아니라 ‘毒殺’한 후 방화로 위장한다.



‘음모’는 숙경과 강택수가 김국현의 재산을 뺏으려고 벌이는 謀議이다. 숙경은 김국현의 첩이 되기 전, 강택수와 결혼한 사이였다. 강택수가 감옥에 들어간 사이 요부적 기질을 감추지 못하고 남자를 찾다 김국현에게 정착한 것이다. 전남편 강택수는 현재 숙경의 ‘姦夫’이다.

- ① “어째 다 위험한 짓 같구려. 아이 난 다 귀찮아서...”(1권 73쪽)
- ② “아이 고까짓 것-그저 몇 해만 눈 꿈적하고 참으면 **그집 재산이 다 우리 것인데** 고새 못 참아서 튀어나와?-큰일 날 소리도 다 많지 여보, 그런 정신 없는 소리 꿈에도 하지말우”(1권, 73쪽).

예문 ①은 강택수의 대사이고, 예문 ②는 정숙경의 대사이다. 강택수는 망설이는 기색이 보이지만, 숙경은 강택수를 다시 만난 첫날부터 김국현의 재산을 뺏어서 둘이 잘 살자고 주장해왔다. 숙경이 범행을 주도했다면, 택수는 우유부단하게 주저하다가 사악한 뱀의 꼬임에 빠지듯 넘어가 버린다. 그러나 숙경의 계획에는 본부 김국현 살해 후 강택수와 함께 하는 삶은 없었다. 결국 강택수는 교미가 끝나면 잡아먹히는 거미의 신세처럼 숙경의 음모가 실현되면 그녀로부터 버림받을 운명에 있었다. 불행한 결말이 예고되어 있는 줄 알면서도 강택수가 숙경의 범죄를 도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녀가 남성을 꿈쩍 못하게 만드는 요부였기 때문이다. 요부형 여성들은 한 남자에 만족하지 않는다. 숙경은 김국현의 부인 자리에서도 간부 강택수를 두었고, 그에 그치지 않고 애희의 정조를 유린한 이달과도 관계를 맺었다. 그러면서도 본부 김국현 살해 후에는 영철을 돈으로 유혹하여 차지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다.

- ① 학교에 다니지 아니하고 집에 들어 박혔더니 내외하고 부끄러워할 때이지만 사내들 틈에서 사내처럼 뉘여난 숙경은 암전하면서도 활발한 **이상스러운 이중 성격과 요부적 성질**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1권, 179쪽).
- ② 숙경은 밤에는 국현에게 아양을 떨고 낮에는 택수에게 아양을 떨었다. 그 **능란한 수단**에 두 사나이는 그물에 걸린 고기처럼 되고 말았다. 택수는 전보다 훨씬 숙경을 사랑하였다. 사랑한다는 것보다 그 발달한 숙경의 유혹에 끌리고 말았다(1권, 192쪽).

위의 지문에서 강조되는 것은 숙경이 ‘타고난 요부’라는 것이다. 이는 본부살해 범죄가 조혼의 폐해와 악습이라는 사회적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 결론지은 신문의 논설과는 상반된다. 본부살해범 숙경은 사회적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범죄자(요부)의 기질을 타고났다. 그녀와 사랑에 빠진 남성들은 대가를 치러야 했다. ‘타고난 요부’인 숙경은 자신과 정을 통하였던 강택수·이달과 공모하여 김국현을 살해하고 방화로 위장한다. 이로써 숙경의 본부 김국현은 살해당하고 강택수와 이달은 살인사건에 연루된다. 『사씨남정기』에서 첩의 꼬임에 빠졌던 本夫는 구원되나, 『마도의 향불』에서 요부 숙경의 꼬임에 빠졌던 남성들은 모두 파멸의 길을 걷는다. 이로써 숙경은 남성을 파멸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독부인 팜프파탈의 이미지를 구축한다. 그러나 『마도의 향불』에서 숙경의 본부살해 과정은 상세하게 묘사되지 않고 생략된다. 숙경이 국현의 약에 비소를 타는 장면이 유일하게 삽입되는데, 이 장면은 목격자 소희 때문에 본부살해를 실행하지 못하는 부분이다. 숙경의 본부살해를 직접적으로 묘사하지 않은 것은, 그것 자체가 봉건 질서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 비가 주룩주룩 쏟아지는 밤이었다.

숙경은 아무리 하여도, 국현을 그대로 두었다가는 살아날 것 같고, 그렇다면 유언장도 소용이 없고 크나큰 재산이 자기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할 것 같아서 며칠을 궁리하다가 종래는 준비하였던 독약을 국현에게 먹이기로 결심하였다. 밤이 깊어서 숙경은 마루로 나가서 양을 다지었다. 그 약 속에 독약을 넣으려고 한 것이다. 집안 식구는 다 잠이 들고 큰 집은 죽은 듯 고요하였다. **어두운 밤에 비오는 소리만 요란하였다.** 그리고 백통 화로에 빨간 숯불이 이글이글하고 약 끓는 소리만 났다. 그 옆에는 숙경이 혼자서 쭈그리고 앉았다. 그리고 독약 봉지를 만지막거리었다. 소희는 자다가 문틈으로 내다보니, 숙경이 청승맞게 앉아서 약을 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두컴컴한 마루에 앉아 있는 숙경이 귀신처럼 보이곤 했다.** 소희는 웬일인지 자기도 모르게 소름이 쭉 끼치며 몸서리가 났다. …아이구 내가 왜 이럴까? 이상도 해라. 소희는 문틈으로 내다보며 이렇게 생각하였다. **비는 시름없이 쏟아졌다**(2권, 364~365쪽).

숙경이 김국현의 약에 비소를 타는 장면이다. 범죄소설이라면, 소희는 법정에서

목격자로서 증언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강조되는 것은 목격자로서의 소회가 아니다. 아버지는 병환으로 누워 계시고 언니는 집을 나가 소식이 없는 ‘음산한’ 집에서 “귀신처럼 보이”는 계모 숙경과 함께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던 아무런 힘이 없는 불쌍한 소회는, 『장화홍련전』에서의 홍련을 연상시킨다. 『마도의 향불』은 1932~33년 당시 유행처럼 번지던 본부살해범죄를 다룸에 있어, 고전적인 이미지를 계속해서 삽입한다. 이는 본부살해가 근대화 과정에 남아 있었던 봉건적 잔재인 조혼이라든가 사랑 없는 매매결혼 때문에 빚어지는 사회적 범죄라기보다는, 마치 고전소설의 계모와 첩으로부터 ‘유전적으로’ 마녀의 피를 이어받은 여성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인식시킨다. 그러나 『마도의 향불』의 숙경은 남편의 애정을 사이에 두고 전처소생을 시기하던 『장화홍련전』의 계모 허씨도, 남편을 미혹케 하여 본처를 내쫓은 『사씨남정기』의 첩 교씨도 아니다. 그녀가 도전장을 던지는 대상은 전처소생이나 본처가 아니라 바로 본부 자체이다. 따라서 30년대 남성들에게 본부살해는 남편의 권위를 몰락시켜 봉건적 가정의 질서를 붕괴시키는 ‘위협’으로 다가왔다. 음산한 분위기에서 ‘줄기차게 내리는 비’는 바로 봉건적 가정의 몰락을 암시한다.

### 3. 本夫殺害犯의 근대적 재판과정과 권선징악 구도

신체에 위협을 받은 남성들은 본부살해 여성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이르는 처벌을 가했다. 당시 남편이나 시모가 가정부인을 학대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는 도덕적인 지탄의 대상이었지 처벌의 대상은 아니었다. 남편이나 시모의 아내나 며느리에 대해 저지르는 상해나 살인은, 근대적인 재판 제도가 들어오기 전부터 집안에 분란을 일으킨 여성에게 가하던 사형(私刑)에 해당되었다. 따라서 사형(私刑)은 30년대까지도 가정 내에서 남편이나 시부모가 여성에게 무차별적으로 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신문과 같은 대중매체들은 본부(本夫)가 처(妻)에게 가한 사건에 대해서는 축소하고, 본부살해사건에 대해서는 몇 회에 걸쳐 보도하며 ‘사형’ 혹은 ‘무기징역’이라는 판결여부를 제목으로 달아 독자를 자극했다. 당시 본부살해사건은 재판부의 판결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따라서 죽을죄를 진 악녀에 대해서 증거를 명명백백히 밝혀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는 인식이 팽배했다. 대중소설

들은 살인을 저지르고 법정에서 선 여자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탐정 소설의 유행에 따라 탐정, 수수께끼, 탐정소설가 등과 같은 용어를 대중소설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sup>41)</sup>, 근대적 재판의 기소과정에 해당하는 형사, 판사, 재판부 등과 같은 용어들을 곳곳에 배치했다.

- ① 재판소에서 **판사**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것을 **죄수가 듣고 앉았는 것과 같았다**(1권, 61쪽).
- ② 이렇게 순하고 암전한 애희가 이런 때는 **형사판사** 이상이란 말야...(1권, 90쪽).

예문 ①은 숙경이 애희를 이달과 결혼시키려는 목적으로 이달을 초대했을 때 묵묵히 듣고 있는 애희의 심정이고, 예문 ②는 애희가 온양온천 간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 추궁하자 뜨끔하여 당황한 영철이 하는 생각이다. 예문 ①을 들여다보면, 당시 사람들에게 재판소의 판결은 상당히 위압적이었다고 짐작된다. 애희는 당시 신여성의 대표인 여학생이었음에도 불합리한 이 자리에서 죄수처럼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무언가를 추궁당하는 것은, 종종 형사판사에게 취조당하는 것에 비유된다. 『마도의 향불』은 이처럼 전혀 다른 상황에서 당시 대중의 관심을 적절히 반영하여 독자를 설득하는 방법을 썼다. 대중에게 익숙한 관습이나 코드를 활용하는 것은 등장인물의 감정에 몰입하도록 하는 데 유용했다.

『마도의 향불』에서 정조를 유린한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을 가하지 않았음에도, 국현의 본부살해사건에 대해서는 ‘마도’라는 장에서 100쪽(333-433쪽)에 상당하는 분량을 할애하여 수사과정과 재판을 다룬다. 『마도의 향불』이 다른 신문 연재소설에 비해 길어진 것은 바로 방화 살인사건에 대한 용의자 심문과 수사과정 때문이다. 이것은 본부살해에 대한 형사의 조사과정, 재판부의 판결, 증거 제시 같

41) 『마도의 향불』 내에서도 탐정소설가, 수수께끼 등과 같은 용어들이 유행처럼 등장한다. “애희는 한참이나 영철의 얼굴을 바라보았으나 그 얼굴에 박힌 **수수께끼**를 파낼 수가 없었다. 애희는 안타까와 영철의 얼굴을 손톱으로 박박 긁어 가죽을 벗겨서라도 그 속에 숨긴 **비밀**을 찾아 내고 싶었다”(91쪽), 영철은 “몸이 아프지 아니 하면, 곧 뛰어 나가서 **정답**을 해 보고 싶었다. 확실히 자기에게는 그런 **탐정가적 소질**이 있고, 또 이번 일을 자기가 들어 하면, 당국보다 못지 아니한 활동을 할 것 같았다”(404쪽).

은 것들이 당대 민감한 관심사였음을 말해준다. 본부살해법의 체포와 함께 신문에서 다루는 것은 바로 그에 합당한 ‘처벌’이다. 근대의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개입되는 것은 범인을 법정에서 세우기 위한 ‘證據’이다. 『마도의 항불』에서 용의자 숙경을 살인범으로 만드는 데도 ‘證據主義’가 채택된다. 그러나 증거주의를 표방하는 형사들은 객관적 증거 수집 이전에 “계모라지?”(385쪽), “첩으로 있다가 정실이 되었다지?”(388쪽), “본 남편이 있었지?”(392쪽) 등의 질문을 던지며 이미 숙경이 범인임을 확신하고 있었다. 本夫 김국현 방화 살인사건에 대한 형사의 수사과정을 따라가 보기로 한다.

- ① 물론 넘겨 잡고 위협하는 것이오 사실 증거는 없었다. 다만 숙경이 유력한 용의자라는 것 밖에 다른 증거는 없었다. 독약도 그러하고 방화도 그러하다. 또 방화인지 그것조차 아직은 미분명하다(2권, 391~392쪽).
- ② 형사는 아무리 보아도, 숙경과 택수가 공모한 것으로 밖에 해석할 수 없는데, 택수는 숙경이 맡으라고 해서 그런 것을 가졌다고 하니, 그러면 숙경 혼자서 독약을 먹고 방화를 한 것인가? 또 숙경의 말을 들으면, 전부 강택수가 살인방화를 하고, 돈과 서류를 훔쳐 가지고 간 것처럼 되었다./ 증거는 충분하지마는, 그들이 자백하기 전에는 진상을 알 도리가 없었다(2권, 417~418쪽).
- ③ 그 혈청 검사로 일남이가 정말 국현의 아들이면 재산 상속도 되려니와 숙경의 죄도 가벼워 질 것이나, 만일 택수의 아들이나 그밖에 다른 사람의 아들이면 숙경의 죄는 무거워질 것이다(2권, 418쪽).
- ④ 국현의 혈액형은 ‘B’ 형이요 일남의 혈액형은 ‘AB’ 형이었다. 다시 택수의 혈액형을 감정하니 ‘AB’ 형으로 일남이와 같았다./ 즉 일남은 국현의 아들이 아니요, 택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대강 짐작하게 되었다. 만일 세 사람의 혈액형이 다 같았던들 이 무서운 비밀은 영원히 감추어졌을지도 모른다. 경관은 다시 활기를 띄우고 숙경을 개 다루듯하며 문초를 하였다. 숙경도 이제는 할 수 없는 듯이 일남은 국현의 아들이 아니요 택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자백하고야 말았다(2권, 418쪽).

예문 ①에서 ④는 국현의 살인방화 사건에 대한 용의자 심문 과정이다. 예문 ①에서 숙경은 아직 증거가 없기 때문에 용의자이다. 그러나 ‘용의자’ 숙경은 이미

방화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취급받았다. 형사의 조사는 용의자가 유죄나 무죄나, 범인이나 아니냐를 입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용의자로 의심받는 순간, ‘그녀’는 이미 유죄이다.<sup>42)</sup> 증거가 확보되어 가는 과정은 용의자(미리부터 범인이라 가정하자)의 유죄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예문 ②에서 사건 수사 형사들은 이미 증거는 충분한데, 다만 아직 숙경과 택수의 범행 일체에 관한 자백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한다. 당시 증거주의에 입각한 수사는 꼭 범인의 ‘자백’으로 마무리되었다.<sup>43)</sup> 자백은 모든 증거를 압도할 만큼 절대적이었다. 증거란 범인의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필요한 절차였다. 그들이 확보한 증거는 불탄 집에서 컵에 묻어 있던 독약과 김국현의 몸에서 검출된 독약이 같은 비소라는 것과 강택수에게서 김국현의 통장과 재산서류가 나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증거만으로는 그들이 유력한 용의자, 범인으로 가정하는 숙경을 법정에서 세울 수 없었다. 강택수가 살인방화를 모두 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문 ③에서 용의자 숙경을 범죄자로 만드는 데 결정적 증거로 내세우는 것은 ‘일남이가 누구의 아들인가’이다. 예문 ④에서 일남이가 국현의 아들인지, 택수의 아들인지를 판별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로 내세운 것은 바로 ‘혈액형’이다. 혈액형 감정에서 택수와 일남은 둘 다 AB형이었다. 혈액형이 같다는 사실만으로 일남은 택수의 자식이라 결론짓는다. 여기에서 결정적 증거로 내세우고 있는 혈액형은 현대 과학으로는 말도 되지 않는 비과학적인 것이다. 숙경의 혈액형은 검사도 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과학적이지 않은 증거를 내세워 ‘용의자’를 법정에서 세운 것과 같다. 또한 일남이가 국현의 자식이면 숙경의 죄가 가벼워지고(살인방화사건의 주

42) 절반쯤 완전한 증거 하나가 있을 경우, 그것이 완전한 것이 되지 않으면, 용의자는 무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절반 유죄인 자로 되는 것이다. 또한 중대한 범죄라면 단지 경미한 증거라도 당사자는 ‘어느 정도’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 용의자는 무죄로 되는 것이 용의자인 한, 그는 어떤 종류의 징벌을 마땅히 받아야 하며, 무죄의 상태에서 혐의의 대상이 되는 일은 없었다. 푸코(저)/오생근(역),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나남출판, 2003), 80~81쪽.

43) 문서 본위이고 비밀유지를 취지로 삼는, 또한 증거를 조립하기 위하여 엄격한 규칙을 따르게 마련인, 형법상의 증거조사는 피고인 없이 진실을 생산할 수 있는 장치이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소송 절차는, 엄격한 권리로서 자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라도 필연적으로 자백을 구하는 경향이 있다(푸코, 위의 책, 74~75쪽). 그러나 30년대 국내의 증거주의에 입각한 수사는 ‘자백’을 유도하기 위한 허위적 혹은 연극적 장치에 지나지 않았다. 객관적 증거는 없었고 자백이 유일한 증거였던 것이다.

범이 아니다) 택수의 자식이면 숙경은 틀림없는 방화 살인사건의 주범이라는 인식 자체가 불합리하다. 형사의 조사과정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범인의 자백 역시 범행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일남이가 택수의 자식이라는 것이다. 숙경이 일남이 택수의 아들이라고 자백하는 순간, 이미 범행을 자백한 것과 다름없었다. 숙경은 ‘나는 방화 살인사건을 계획하고 주도했다’가 아니라 ‘나는 정숙한 여자가 아니라 음탕한 여자이다’라고 자백했다. 과학적 증거를 내세우고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허위적 장치에 지나지 않았다. 그녀가 법정에 선 것은 본부살해사건의 증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타고난 요부적 기질이 있는 毒婦였기 때문이다. 작품의 초반부에서 숙경의 매혹에 흔들렸던 영철은 국현이 독살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마자, “그 요부 독부가 녀넌히 그런 여자라고”(403쪽) 판단한다. 법정에 세워지기 훨씬 전부터 숙경은 이미 살인범이었다.

숙경의 본부살해가 명명백백히 밝혀져 마녀로 ‘처벌’받는 한편, 정조유린사건으로 영철과 헤어졌던 애희는 영철과의 사랑도 다시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재산도 물려받게 된다. ‘정숙한 애희’는 ‘요염한 숙경’과 대비를 이루며 독자의 기대(애희와 영철의 사랑이 이루어지고 숙경의 범죄가 드러나길 바란다)를 충족시키는 ‘권선징악’ 구도를 그리는 데 성공한다. 30년대 신문연재소설은 이처럼 두 유형의 여성을 대비하여 한 여성은 해피엔딩을 맞이하고, 다른 한 여성은 파멸하게 되는 구도를 종종 그린다. 대표적으로 30년대 가장 많은 인기를 끌었던 『찔레꽃』의 정순과 기생 옥란을 들 수 있다. ‘첩’이었던 기생 옥란은 가정부인의 자리를 넘보지만 결국 살인범이 되는 파국을 맞이하며, 정순은 오해가 풀리고 해피엔딩을 맞이한다. ‘정숙한 여성(처녀 혹은 가정부인)’과 ‘매혹적인 요부(첩 혹은 후처)’의 대비를 통해 구현된 ‘권선징악’은 일종의 사회적 관습으로 굳어진다. 독자는 정숙한 여성이 해피엔딩을 맞고 음탕한 여성이 처벌 받는 것을 당연시하기에 이르렀다.

#### IV. 결론: 악녀 후처의 등장과 팜프파탈의 고착화

방인근의 『마도의 향불』은 당시 들끓었던 본부살해사건을 모티프로 삼아 팜프파탈 숙경의 음모와 살인을 그렸다. 신문연재소설 『마도의 향불』에서 구현된 본부

살해범이 신문기사나 논설과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바로 그녀들이 ‘후처’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실제 본부살해범은 후처가 아니라 ‘본처’였다. 그런데, 대중소설 속에서 속경을 비롯하여 본부살해를 저지른 여성은 모두 재취한 여성, ‘후처’로 등장한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본처와 후처의 간극, 여기에는 여성에게 가해지던 ‘정조’ 관념을 이용하여 봉건적 가정 질서를 공고히 하려는 미묘한 의도들이 숨어 있었다.

식민지조선의 남편들은 『사씨남정기』에서 쫓겨나서도 남편에 대한 애정에 변함이 없는 ‘善한 本妻’를 영원히 잃어버렸다. 본부살해가 들끓던 1920·30년대는 근대적 부부관계인 일부일처제가 만들어지던 시기였다.<sup>44)</sup> 근대적인 일부일처제에서 첩을 둔 남편은 본처로부터 간통죄로 고소당하거나 이혼당할 수 있었다. 벼랑 끝에 몰린 本夫에게 本妻의 살인은 곧 봉건적 가정의 몰락을 상징하므로 인정할 수 없었다. 따라서 남성은 악독한 첩의 꼬임에 빠졌을 뿐이라 역설하며 본처가 아닌 첩에게 살인죄를 씌운다. 봉건적 가정을 유지하려는 미묘한 움직임은 남성뿐만 아니라 본처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 여성에 의해서도 구축되었다. 근대의 법제도에서 ‘본처’의 지위란 법으로 인정된 자에게만 허락되었다. 과거에는 본처의 지위로 절대 올라갈 수 없었던 첩도 법적 아내가 되면 본처가 될 수 있었다. 말 그대로 ‘후처’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후처’는 본처의 자리를 위협하거나 빼앗는 존재일 수밖에 없었다. 작품 내에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상징적으로 이미 죽어있는 것처럼 보였던 본처는, 후처에게 간통과 본부살해의 죄를 뒤집어 씌웠다. 신여성, 여학생, 기생, 첩 등에게 자신의 자리를 내주어야 할지도 모르는 위태로운 상황에서 ‘여성의 정조’는 본처가 가진 최후의 카드였다. 살인의 잔혹한 역할을 후처에게 돌림으로써 식민지시기 본부와 본처는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독자는 악녀 후처에게 덧씌워진 ‘繼母’와 ‘妾’의 이미지에 현혹되어 그녀들의 ‘惡’을 재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30년대 신문연재 대중소설 속에 구현된 악녀 후처는 봉건적 가정 질서를 위협하는 존재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봉건적 가정 질서를 더욱 공고화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44) 정지영,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 『여성과 역사』, 9(2008), 79~119쪽 참고. 당시 신문연재소설에서 본처는 이미 죽어 있거나 등장하지 않음으로써, 본부살해사건이나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에 연루되지 않는다. 이것은 당시 본처의 범죄는 축소하거나 보도하지 않고 첩의 범죄는 확대하거나 널리 보도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정지영, 위의 논문, 106~107쪽 참조.



특이한 것은 속경과 같은 ‘本夫殺害犯’이 당시 탐정소설의 범인으로 등장한다는 사실이다. 『마도의 향불』이 완결되던 1934년 《조선일보》에 채만식의 탐정소설 『엄마』가 연재된다. 이재석의 ‘후처’로 들어간 서광옥은 간부 유대설과 함께 그의 재산을 빼돌린다. 서광옥과 관계를 맺었던 이재석과 유대설은 결국 죽음에 이르는 파국을 맞이한다. 『엄마』의 서광옥은 『마도의 향불』의 정숙경을 고스란히 닮았다. 탐정소설에서 탐정(善)이 반드시 잡아서 처벌해야 하는 범인(惡)은, 곧 30년대 여성 범죄자의 모습으로 낙인찍혔다. 20·30년대 본부살해 여성은 탐정소설 속 범인으로 등장함으로써, 범죄와 연루되어 남성을 파멸로 이끄는 팜프파탈의 이미지로 고착되었다. 『艶魔』, 『魔人』이라는 제목 자체도 의미심장하다.<sup>45)</sup> ‘艶魔’는 ‘濃艶한 惡魔’, ‘魔人’은 그 자체로 ‘惡魔’를 의미하듯이, 탐정소설은 여성범죄자를 ‘악마’로 규정지었다. ‘여성=범죄자=악마’의 공식이 30년대 신문연재소설에서 반복해서 등장(채만식 『탁류』의 초봉, 염상섭 『삼대』의 수원댁에 이르기까지 신문연재 장편소설 전반에 걸쳐 등장)함으로써, ‘여성범죄자’ 팜프파탈의 이미지는 굳어진다. 한국 팜프파탈은 식민지조선을 들끓게 했던 본부살해사건과 그것을 둘러싼 담론과 숨은 의도들, 그리고 대중소설에 공고화된 권선징악의 구도가 복잡 미묘하게 결합되어 탄생되었다.

#### 참고문헌

- 김만중, 『사씨남정기』(겨레고전문학선집22). 서울: 보리, 2007.
- 김말봉, 『절레꽃』. 서울: 大一出版社, 1978.
- 류승현, 「일제하 조혼으로 인한 여성범죄」. 박용욱(편), 『여성: 역사와 현재』. 서울: 국학자료원, 2001, 357~394쪽.
- 윤정현, 「方仁根 小説에 나타난 作家的 自我的 實相」. 『한국 근대소설론고』. 서울: 국학자료원, 2001, 31~50쪽.
- 이명옥, 『팜프파탈: 치명적 유혹, 매혹당한 영혼들』. 서울: 다빈치, 2003.
- 장용경, 「식민지시기 본부살해사건과 ‘여성주체」. 『역사와문화』 13, 2007, 105~125쪽.

45) 당시 탐정소설의 제목으로 『엄마』, 『마인』처럼 범인을 내세운 것은, 한국 탐정소설에서 후대에 유명한 탐정의 이름을 남기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그런 결과를 감수하면서도 당시 사람들이 범인을 제목으로 내세웠다는 것은, 당시 ‘본부살해범죄’ 자체의 파급 효과가 상당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全圭泰(編), 「장화홍련전」. 『한국고전문학대전집1』. 서울: 世宗出版社, 1970, 429~446쪽.  
 정지영, 「근대 일부일처제의 법제화와 첩의 문제」. 『여성사』 9, 2008, 79~119쪽.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독자의 탄생과 한국 근대문학』. 서울: 푸른역사, 2003.  
 최애순, 「한국적 탐정소설로서 『엄마』의 가능성과 의의」. 『현대소설연구』 37호, 2008, 199~228쪽.  
 한명환, 「1930년대 신문소설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논문, 1995.  
 가메이 히데오(저)/김춘미(역), 『明治文學史』.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2006.  
 미셸 푸코(저)/오성근(역), 『감시와 처벌: 감옥의 역사』. 과주: 나남출판, 2003.

### 국문 요약

본 논문에서는 식민지시기 이슈화되었던 본부살해사건과 대중에게 인기를 끌었던 『마도의 향불』에 묘사된 숙경의 범죄는 어떤 연관을 맺고 있는지 고찰해보기로 한다. 그것은 한국 대중소설에서 팜프파탈의 이미지가 어떻게 고착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방인근의 『마도의 향불』은 1920·30년대 들끓었던 본부살해사건을 모티프로 삼아 팜프파탈 숙경의 음모와 살인을 그렸다. 당시 본부살해여성들은 동정의 여지가 있음에도 대중소설 속에서 더할 수 없는 악녀로 묘사되었다.

실제 사건의 기사와 대중소설 속에 구현된 본부살해여성의 차이로부터 한국 팜프파탈은 탄생한다. 대중소설 속에 구현된 본부살해여성들은 1) 음녀였으며 2) 남편의 재산을 노려 살해했으며 3) 후처였다. 이것은 실제 본부살해범들이 ‘본처’였으며 ‘불쌍한 소부’가 많았던 것과는 대비된다. 잔혹한 살인의 역할을 음탕하고 요망한 계집인 후처, 첩에게 돌림으로써 식민지시기 봉건적 질서는 공고히 유지된다. 본처로부터 위협받는 本夫와 신여성, 여학생, 첩, 기생 등으로부터 남편을 빼앗긴 本妻는 대중소설 속 악녀 후처에게 살인범과 음녀의 이미지를 덧씌워 자신의 자리를 지킨다. 이것은 30년대 신문연재 장편 탐정소설로 거의 유일한 『엄마』와 『마인』에서 왜 여성이 범죄자로 등장하는지에 대한 설명이기도 하다. 30년대 본부살해범 악녀 후처는 곧 탐정소설의 범인의 특성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30년대 신문연재 장편탐정소설 속 범인의 특성에 대한 간접적인 답변이기도 하다. 한국 팜프파탈은 대중소설 속에 반복적으로 구현된 본부살해여성들이 탐정소설에서 남성을 과멸시키는 ‘범죄자’로 등장함으로써 탄생되었다.

- 투고일 : 2009. 4. 10.      ● 수정일 : 2009. 6. 9.      ● 게재확정일 : 2009. 6. 15.
- 주제어(keyword) : 본부살해(a case of murder, one's legal husband), 팜프파탈(femme fatale), 여성 범죄자(woman criminal), 대중소설(the popular novel), 『魔都의 향불』(*An incense fire of Ma-do*).